양수리 더블유캐슬 입주자 모집공고

■ 2016.11.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7.2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1.15)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24.) 현재 주택건설 거주지역(양평군)은 물론 이와 인접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지역(양평군) 신청자가 수도권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고령자와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24.) 현재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중 주택공급 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가입한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거주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자가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wcastle.co.kr)를 운영하오나 홈페이지만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분양사무소를 방문 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분양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은 없음)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1.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 생태허가과 -83022(2017.07.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대상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85-7번지 외 14필지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상 10층 아파트 1개동 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총 2,179㎡, (공동주택 : 2,179㎡)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민영주택	2017000619	79.3329	79.3329	20.3436	99.6765	0.1228	99.7993	40.2379	1
	2017000619	82.2914A	82.2914	21.0403	103.3317	0.1273	103.4590	41.7385	2
	2017000619	82.3089B	82.3089	22.1799	104.4888	0.1274	104.6162	41.7474	1
	2017000619	83.3764A	83.3764	21.2945	104.6709	0.1290	104.7999	42.2888	6
	2017000619	83.4839B	83.4839	21.2726	104.7565	0.1292	104.8857	42.3433	4
	2017000619	83.7889C	83.7889	21.6846	105.4735	0.1296	105.6031	42.4980	2
	2017000619	84.7229A	84.7229	21.9643	106.6872	0.1311	106.8183	42.9718	2
	2017000619	84.7475B	84.7475	22.8992	107.6467	0.1311	107.7778	42.9842	2
	2017000619	84.8050C	84.8050	22.9074	107.7124	0.1312	107.8436	43.0134	2
	2017000619	84.8839D	84.8839	22.8146	107.6985	0.1313	107.8298	43.0534	6
	2017000619	84.9504E	84.9504	22.0038	106.9542	0.1314	107.0856	43.0872	8
	2017000619	84.9504F	84.9504	22.0038	106.9542	0.1314	107.0856	43.0872	2
	2017000619	84.9629G	84.9629	21.9872	106.9501	0.1315	107.0816	43.0935	4
	2017000619	84.9629H	84.9629	22.8144	107.7773	0.1315	107.9088	43.0935	2
	2017000619	112.3959	112.3959	29.1315	141.5274	0.1739	141.7013	57.0076	1
	2017000619	119.2240	119.2240	30.8592	150.0832	0.1845	150.2677	60.4709	2
	2017000619	120.0640	120.0640	31.0635	151.1275	0.1858	151.3133	60.8969	2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면적합산시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복리시설, 경비실, 지상주차장, 지상층코어부분,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등 공용면적임.
※ 분양사무소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도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설계 시공됨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사무소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VAT포함)

동 별	공급세대수	층구분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101동	1	10층	75,408,751	342,691,249	418,100,000	41,810,000	376,290,000
	2	8층 ~ 9층	78,220,911	339,579,089	417,800,000	41,780,000	376,020,000
	1	10층	78,237,545	363,062,454	441,300,000	44,130,000	397,170,000
	2	4층	79,252,242	312,247,758	391,500,000	39,150,000	352,350,000
	4	5층 ~ 7층	79,252,242	328,147,757	407,400,000	40,740,000	366,660,000
	2	2층	79,354,425	301,245,575	380,600,000	38,060,000	342,540,000
	2	3층	79,354,425	312,445,576	391,800,000	39,180,000	352,620,000
	2	10층	79,644,338	362,755,662	442,400,000	44,240,000	398,160,000
	2	9층	80,532,139	350,867,862	431,400,000	43,140,000	388,260,000
	1	4층	80,555,522	322,044,478	402,600,000	40,260,000	362,340,000
	1	5층	80,555,522	338,344,479	418,900,000	41,890,000	377,010,000
	1	2층	80,610,178	310,689,822	391,300,000	39,130,000	352,170,000
	1	3층	80,610,178	322,289,823	402,900,000	40,290,000	362,610,000
	1	4층	80,685,175	322,474,825	403,160,000	40,316,000	362,844,000
	3	5층 ~ 7층	80,685,175	338,414,826	419,100,000	41,910,000	377,190,000
	2	8층 ~ 9층	80,685,175	354,814,825	435,500,000	43,550,000	391,950,000
	2	4층	80,748,385	319,351,615	400,100,000	40,010,000	360,090,000
	6	5층 ~ 7층	80,748,385	335,451,615	416,200,000	41,620,000	374,580,000
	2	8층	80,748,385	351,651,615	432,400,000	43,240,000	389,160,000
	2	2층	80,760,267	303,039,733	383,800,000	38,380,000	345,420,000
	2	3층	80,760,267	319,239,733	400,000,000	40,000,000	360,000,000
	1	2층	80,760,267	310,839,733	391,600,000	39,160,000	352,440,000
	1	3층	80,760,267	322,339,733	403,100,000	40,310,000	362,790,000
	1	10층	106,836,312	511,883,688	618,720,000	61,872,000	556,848,000
	2	8층 ~ 9층	113,326,665	542,803,335	656,130,000	65,613,000	590,517,000
	2	6층 ~ 7층	114,125,115	521,804,885	635,930,000	63,593,000	572,337,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112, 119, 120 타입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기본옵션 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비용이 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단지 내 업무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층별, 호별로 구분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일반공급
▶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24.)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능)
•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함.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양평군)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양평군 및 수도권 주택건설지역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양평군 및 수도권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양평군 및 수도권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순 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적용 (85㎡ 초과는 100% 추첨)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양평군 / 경기도	2017.07.31(월)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이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 발표일시 : 2017.08.07.(월)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및 당사 분양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또는 매체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및 전화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범위 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총액이 청약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85㎡ 초과	• 100% 추첨제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제) ※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양평군 및 기타 수도권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		2017.08 01(화)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입력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주택규모를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양평군 / 경기도	서울특별시	기타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11.15)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09.0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 감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비고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	본인청약 가점점수 = ①+②+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단,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위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시신청시 자동 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단,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 1주택(소형,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방법
▶ 공통
1.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2. 공통
• 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11.15)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나 그 세대에 속한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음.(1층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최저층) 최하층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청약 신청접수시 1층 희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람.
3. 1순위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의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1순위 청약자 전원은 100% 추첨제.
• 1순위 청약금은 별도로 없으며, 청약통장으로 대체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공급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 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NH농협(단위농협 제외),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청약 바람
•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도 단위) 전입일을 기재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2순위 : 청약자 거래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 나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대 상	청약신청금	접수장소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계좌 보유자 : www.apt2you.com	-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신청시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금액 이상 잔액 유지) ※ 인터넷 청약시 주택청약 참가은행(총15개 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단위농협 제외),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 하나, 신한은행)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
		은행창구 청약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전 은행	- 창구청약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7.08.08(화)]부터 (시간 : 평일 09:00~16:00, 토 · 일 · 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 ① 인터넷 청약 신청자 -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② 은행 창구 청약자 - 청약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직접 환불(단, 청약자 본인의 접수은행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 신청자 창구 환불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서 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제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제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 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공급세대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공통(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 추첨)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85㎡ 초과의 경우 100% 추첨제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함

※ 당첨자 명단은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분양사무소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당사로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2017.08.07 ~ 2017.08.14 (10일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전화 1369 서비스는 2017.06.15.일부터 폐지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2017.08.07.(월)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17.08.14 (월) ~ 2017.08.17 (목) / 3일간	당사 분양사무소	031)771-70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소 제출[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광주은행	1127-020-122534	아시아신탁(주)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 · 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공통 (본인계약 체결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 입금확인증(※ 분양대금 입금완료 후 입금증 제출 / 별도품목 계약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약금 무통장 입금표를 별도 지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통 인감도장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거주기간 및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점에 산정한 분)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며, 초본은 3년간 거주확인 사항임)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처리일 기준, 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과, 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인 경우, 사업주체에 부적격사실 소명 및 청약 계좌부활 신청을 통해,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 계좌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가능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을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양평군 및 수도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함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월 : 2018년 09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MDF실,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주차장 등
■ 기타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일정 시공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 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Ⅰ	문	각 목문틀(사춤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 (각 침실문, 욕실문, 미닫이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욕실문틀 하부씰,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Ⅱ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Ⅲ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매립배관(안방, 거실)
Ⅳ	천장	천정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 스프링 쿨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 배관 및 디퓨저 (욕실제외)
Ⅴ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Ⅵ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주방TV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Ⅶ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 및 장, 파우더장, 반침가구(붙박이장, 시스템장), 수납선반	
Ⅷ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선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금액

주택형(주거전용면적)	79	82A,82B,83A,83B,83C	84A,84B,84C,84D,84E,84F,84G,84H	112,119,120
금액	23,451,000	24,666,000	24,867,000	28,436,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등록세 통합)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 부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체결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은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간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 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 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주택형	확장위치	발코니확장금액	비고
82.2914A	안방/거실	3,101,000	
83.3764A	안방/거실	3,056,000	
83.4839B	안방/거실	3,244,000	
84.7229A	안방/거실/침실1	4,698,000	
84.7475B	안방/거실/침실1	4,724,000	
84.8050C	안방/거실/침실1	4,940,000	
84.8839D	안방/거실/침실1	4,705,000	
84.9504E	안방/거실/침실1	4,907,000	
84.9504F	안방/거실/침실1	4,804,000	
84.9629G	안방/거실/침실1	5,094,000	
84.9629H	안방/거실/침실1	4,877,000	
119.2240	거실/침실1	3,083,000	
120.0640	거실/침실1	3,083,000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대금	광주은행	1127-020-122534	아시아신탁(주)

• 일부세대(79.3329/82.3089B/83.7889C/112.3959)는 발코니확장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2005.12.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일체의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등록세 통합)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는 발코니 확장시 벽체, 천장, 마루마감 및 가구 등이 미시공되며, 자세한 시공기준은 반드시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시공으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소에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과 변경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미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자에 따라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아시아신탁(주)가 공급하는 건으로 시행위탁사 동광산업개발(주)와 아시아신탁(주), 우암건설(주)이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요청 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 해지되는 경우, 아시아신탁(주)으로부터 동광산업개발(주)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인의 지위가 이전되며, 이에 대해 매수인(계약자)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위탁사 동광산업개발(주)가 시행사 아시아신탁(주)에게 신탁 계약된 사업으로써 신탁해지시에는 사업주체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 등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됨.
•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 및 계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이전고시 후 등기가 경로되는 관계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분양사무소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사무소는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분양사무소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소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무소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분양사무소,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소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분양사무소 확인 우선으로 함.)
• 분양사무소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승인인가에 따라 시공됨.
• 분양사무소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함.
• 대지의 일부는 도로 및 인도로 사용됨.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 개별 공지 예정임.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단지 주변현황(도로, 인접 주택단지, 인접APT 단지, 주변상가, 학교, 완충녹지(기부채납 완충녹지 포함)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에 설치되지 않은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평형별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단지 내 부대시설(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소방용/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이 경우 소수점 4째 자리의 합이 일정치 않을 경우 특정세대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연면적 변경없이 처리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준공입주 후 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지조경(녹지 및 수경시설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사항]
•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등 APT대지 이외에 개발 계획은 관계법령의 변경, 허가권자와의 협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저류지 대체시설, 우수, 오수, 용벽 계획 등)
• 신설 및 정비 예정도로, 가감속 차로 계획 등 기반시설 및 주변상황은 해당 관할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승인인가도서와 실 시공용 설계도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부출입구로 연결되는 단지 외부도로 등 단지 외부도로 주변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버스정류장 위치, 차량의 동선방향, 횡단보도, 신호체계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특화시설 CG 및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시설물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야간 경관조명계획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 · 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향후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1~3층) 외관 마감재의 경우 지정 석재 및 점토벽돌, 석재 뿜칠, 수성페인트 등 다양한 마감재로 혼용 시공되며 환경 디자인 도서에 따라 시공됨.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도로의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문주, 맘스스테이션 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 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자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각 동별 쓰레기 분리 수거장 위치 및 개소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변경 및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소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성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은 사업 승인도서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음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주변시설과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전에 사업부지, 현장여건 및 주위 환경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동차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계획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전에 사업부지, 현장여건 및 주위 환경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별도 설치되지 않음.
• 단지내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임.
• 또한 지상주차로 인해 저층부 일부세대는 소음, 불빛등의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지상주차로의 표기는 인허가상의 관과 협의를 본 내용을 표기한것으로, 준공시 실제 단지내 도로 폭(보행자 보도 제외)으로 만 정확하게 표기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정보통신공사는 사용전 검사기준에 준하여 설치되며, 각실 통신수구는 거실 : 2 / 침실(1) : 2 / 침실(2,3) : 1 /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음
• 전 주택형의 세대 주방 천정에는 매립 ·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유출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300 X 300mm)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시공시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카탈로그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본 시공시 창호는 동등 성능의 제품 내에서 타사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손잡이 모양 등이 카탈로그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에어컨 개별 설치를 위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2개소)에 한해 매립 설치되며,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에는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가 미시공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온돌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적인 곳에 정하였으며, 개별적인 위치변경 요청은 불가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거 공용부분의 계단실 내 창은 화재시 제연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일부층을 제외하고는 고정창 형태로 설치됨.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발코니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외부마감재(저층부) 특화로 인해 간섭되는 외부창호의 규격이 축소될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별도 분양시설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단 대지 경계(구획)가 임의로 산정되어 있으며 경계에 대한 대지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또한 대지 경계와 실 사용 공간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항 목	적용여부	비 고
의무사항이행여부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기기	적용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 고
감리구분	건축/토목/설비	(주)금호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162,184,500원	
	전기, 소방, 통신	(주)재원엔지니어링	33,000,000원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회 사 명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2,127,450,000원	제01282017-101-00098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유의사항: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관리형토지신탁
① 본 사업은 시행자인 동광산업개발(주)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동광산업개발(주)이고, 아시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우암건설(주)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아시아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동광산업개발(주)와 수탁자 아시아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동광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위탁사
상호	아시아신탁(주)	우암건설(주)	동광산업개발(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14층 (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55번길 11, 2층 201호
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1-4472215	134311-0028408

※ 본 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인 "아시아신탁주식회사"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인 "동광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양평 양수리 더블유 캐슬] 사업계획승인을 2017.06.23일자로 득하였으며, 계약자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계약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관련문의

분양문의	분양사무소위치	홈페이지
031) 771-70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16-3번지 , 문의: 031) 771-7000]	www.wcastle.co.kr

■ 분양사무소 위치도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소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양수리 Wcastle 031)771-7000
총 49세대 | 79㎡ ~ 120㎡ |